

2023년 제7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화장품법 제3조의4에 따라 2023년도 제7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3. 4. 25(화) 10:00 ~ '23. 5. 4(목) 17:00	'23. 6. 3(토)	'23. 6. 23(금)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

2. 시험장소

시험지역	시험장소
전국 7개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북)	접수시 응시자가 직접 선택

※ 응시자가 선호하는 시험장소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될 경우 추후배정 고사장으로 배정 후 수험표 확인 시 시험장소 확인 가능합니다.

※ 시험장소는 접수인원, 고사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개별 연락 예정)

※ 기존 정기/특별추가 자격시험에 개설된 시험장소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자격취득자의 경우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는 가능하나, 합격하여도 자격 취득은 불가.
(화장품법 제3조의4제1항에 근거)

※ 응시자격은 제한 없으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합격하여도 자격 취득 불가

4. 결격사유

- 화장품법 제3조의5(법률 제18448호, '21.8.17공포, '22.2.18.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자격시험 합격이후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5.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 및 세부내용

교과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1.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1.1. 화장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의 입법취지 •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 •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 화장품의 품질 요소(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
	1.2. 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관리 프로그램 운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상담
2.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2.1.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원료의 종류 •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 •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
	2.2.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의 효과 • 판매 가능한 맞춤형화장품 구성 •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성적서 구비
	2.3.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에 사용되는 사용제한 원료의 종류 및 사용한도 • 착향제(향료) 성분 중 알려지 유발 물질
	2.4. 화장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의 취급방법 • 화장품의 보관방법 • 화장품의 사용방법 •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2.5. 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여부 판단 • 위해사례 보고
3.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1. 작업장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의 위생 기준 • 작업장의 위생 상태 • 작업장의 위생 유지관리 활동 • 작업장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 작업장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3.2. 작업자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기준 설정 •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상태 판정 • 혼합·소분 시 위생관리 규정 • 작업자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 작업자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 작업자 위생 관리를 위한 복장 청결상태 판단

교과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3.3. 설비 및 기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기구의 위생 기준 설정 • 설비·기구의 위생 상태 판정 •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 • 설비·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 • 설비·기구의 폐기 기준
	3.4. 내용물 원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기준 •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 관리기준 • 보관중인 원료 및 내용물 출고기준 •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기준 •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 확인·판정 •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판정 •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 상태(변색, 변취 등) 확인 •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절차
	3.5. 포장재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의 입고 기준 • 입고된 포장재 관리기준 • 보관중인 포장재 출고기준 • 포장재의 폐기 기준 • 포장재의 사용기한 확인·판정 • 포장재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판정 • 포장재의 변질 상태 확인 • 포장재의 폐기 절차
4. 맞춤형화 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 리 등에 관한 사항	4.1. 맞춤형화장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화장품 정의 • 맞춤형화장품 주요 규정 •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 • 맞춤형화장품의 유효성 • 맞춤형화장품의 안정성
	4.2. 피부 및 모발 생 리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의 생리 구조 • 모발의 생리 구조 • 피부 모발 상태 분석
	4.3.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4.4. 제품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 • 맞춤형 화장품의 부작용의 종류와 현상 • 배합금지 사항 확인·배합 •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제한 사항
	4.5. 제품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화장품 표시 사항 • 맞춤형 화장품 안전기준의 주요사항 • 맞춤형 화장품의 특징 •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법

교과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4.6. 혼합 및 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및 제형의 물리적 특성 • 화장품 배합한도 및 금지원료 • 원료 및 내용물의 유효성 • 원료 및 내용물의 규격(PH, 점도, 색상, 냄새 등) • 혼합·소분에 필요한 도구·기기 리스트 선택 • 혼합·소분에 필요한 기구 사용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준수사항에 맞는 혼합·소분 활동
	4.7. 충진 및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에 맞는 충진 방법 • 제품에 적합한 포장 방법 • 용기 기재사항
	4.8. 재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및 내용물의 재고 파악 •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발주

※상기 내용은 시험일('23.6.3)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규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수학습가이드 개정2판은 해당 가이드가 공개된 2022년 1월 28일 기준의 법령·규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변경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시험방법 및 문항유형

과목명	문항유형	과목별 총점	시험방법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다형 7문항 • 단답형 3문항 	100점	필기시험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다형 20문항 • 단답형 5문항 	250점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다형 25문항 	250점	
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다형 28문항 • 단답형 12문항 	400점	

다. 시험시간

○ 입실시간: 9:00 까지

○ 시험시간: 9:30 ~ 11:30(총 120분)

※ 응시자는 반드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일 교통, 도로, 공사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입실시간(9:00) 이후 고사장 입장이 불가합니다.(고사장이란 학교 정문 등이 아닌 고사실(교실)이 있는 건물의 1층 주출입구를 의미하며, 9시 정각에 고사장 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공지사항 참조)

6. 합격기준

-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7. 원서접수

가. 접수 기간

- '23. 4. 25(화) 10:00 ~ '23. 5. 4(목) 17:00 (10일간)

※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나. 접수 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원서접수는 자격시험홈페이지(ccmm.kpc.or.kr)에서만 가능하며, 단체 및 방문접수는 불가

다. 응시 수수료 결제

- 응시 수수료: 100,000원

- 납부방법 : 전자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 1

※ 모바일 접수 시 계좌이체의 일부 은행이 제한될 수 있음

라. 응시 수수료 환불

-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취소 및 환불

구분	기간	환불금액
시험일 20일 전	'23. 4. 25(화) ~ '23. 5. 14(일)	100% 환불
시험일 10일 전	'23. 5. 15(월) ~ '23. 5. 24(수)	50% 환불
시험일 9일 전부터 시험일 당일	'23. 5. 25(목) ~ '23. 6. 3(토)	환불 불가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는 불가합니다.

※ 상기 일정은 전염병 확산 등과 같이 시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수험표 출력기간

- '23. 5. 29(월) 10:00 ~ 시험 시작 전까지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 시각·뇌병변·지체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별도 공지사항에 따라 편의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내 시험안내 > 응시안내 >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응시 수수료를 결제한 후 원서 접수 확인에서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 파일로 첨부 제출
 - ※ 사진은 JPG, PNG 파일이어야 하며, 크기는 150픽셀X200픽셀 이상, 300dpi 권장, 500KB 이하여야 업로드 가능합니다.
 - ※ 반드시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사진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 가능합니다.
 - ※ 본인이 아닌 사진 또는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을 첨부할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완료 후 제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제출하거나 내용 변경 불가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3. 6. 23(금) 10:00

나. 확인 기간

- '23. 6. 23(금) 10:00 ~ '23. 7. 7(금) 17:00

다. 확인 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내 합격자 발표 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 ※ 기간 이후에는 홈페이지(나의 시험정보 - 나의 응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이의신청

가. 출제문제 이의신청

- 신청내용: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문의

○ 신청기간: '23. 6. 3(토) 17:00 ~ '23. 6. 6(화) 17:00

○ 신청방법: 별도 공지사항 확인

○ 결과안내: '23. 6. 23(금)까지 개별 안내

※ 세부 신청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적 이의신청

○ 신청내용: 과목별 점수산출결과 및 합격여부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신청기간: '23. 6. 23(금) ~ '23. 6. 26(월) 17:00

○ 신청방법: 별도 공지사항 확인

○ 결과안내: '23. 7. 7(금)까지 개별 안내

※ 세부 신청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자격증 발급 신청 (결격사유 심사)

가. 결격사유 심사

○ 대상 : 제7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1~4회차 자격취득자의 경우 소급적용되지 않음

※ 화장품법 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절차

발급 절차	응시자	운영본부
1) 개인정보이용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접수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이용동의 확인
2) 자격 심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자 발표 확인 온라인 자격 심사 신청 제출 서류 확인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3) 심사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원본 등기로 발송 진행상황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4) 심사 결과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 안내 이후 자격증 신청 및 발급 가능 서류보완 시 서류 재제출 부적격시 자격 불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발급 가능여부 알림 서류불충분 시 재신청 및 자격 불가 안내
5) 자격증 신청·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실물 자격증 선택하여 신청 발급 현황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 진행

○ 심사내용

순번	법적근거	확인 방식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진단서 (합격자 본인 제출)
2	피성년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 외국인: 추가 서류 제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진단서 (합격자 본인 제출)
4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 외국인: 추가 서류 제출
5	화장품법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C 내부 관리

○ 서류 제출기한

-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서류 제출

○ 서류 및 제출방법

- 자격 심사 신청서 제출: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제출
- 의사진단서: 필수 항목 및 문구가 기재된 원본(6개월 이내 발급)을 등기로 발송

※ 제출처: (우편번호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생산성빌딩 6층 한생미디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심사 담당자 앞)

※ 의사진단서 포함 문구 및 필수 항목

항목	세부 내용
필수 항목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단내용,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자격번호
세부내용	<p>아래 두 가지 항목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함,”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중독자가 아님”

※ 의사진단서 예시

진 단 서(원본)

환자의 성명	합격자 정보와 일치해야 함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합격자 정보와 일치해야 함
환자의 주소	필수 기재		
환자의 연락처	필수 기재		
환자의 병명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주 상병) (부 상병)	한국질병 분류번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p>다음 2가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필수 기재)</p> <p>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가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함.”</p> <p>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중독자가 아님”</p>		
용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심사용	비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면허 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 관련 해당 국가 발급처에서 발급 받은 아래의 관련 서류를 번역·공증 받아 별도로 제출(한국어 및 영어 제외)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심사 제출 서류

국가	관련서류명	내용	발급처
네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네팔 내무부 경찰국
뉴질랜드	AFFIDAVIT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성명서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타이베이 대사관
독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독일 연방 법무부
러시아	신원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러시아 연방 내무부
말레이시아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몽골	범죄경력 조회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중앙 경찰청
미국	AFFIDAVIT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미국 대사관
벨기에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벨기에 대사관
브라질	범죄경력 증명서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브라질 사법부 (해당 지역 연방 일급 법원)
스위스	범죄기록부	범죄기록 사실유무	스위스 연방 정부
아르헨티나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오스트리아	신원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일본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경찰청
	신분증명서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해당시청
중국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시 공증처
캐나다	AFFIDAVIT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파라과이	범죄기록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경찰청
피지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피지 경찰청
필리핀	범죄경력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필리핀 법무부 국립수사원
호주	진술공증서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호주 대사관

○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기간: 운영본부에서 서류 발송이 확인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결과 확인 방법: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결격사유 검토 현황에서 확인 가능
 -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운영본부에서 개별 통지하여 보완 요청 예정
 - ※ 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 신청 가능

○ 유의사항

1.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일 기준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발급 불가
2. 결격사유 1호, 3호와 관련하여, 모든 합격자들은 결격사유 검토 신청서와 함께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빨리 구비서류 전송 필요
3.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3년 제7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 제출서류’ 표기 요망
4. 의사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5.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6.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송부인 명칭과 합격자 본인의 명칭이 반드시 일치)
7.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심사를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8. 진단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는 자격 취소)
9. 결격사유 2호와 4호와 관련하여,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며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
10. 진단서 및 추가 서류(외국인 해당)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운영본부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통보일 기준 3주 이내로 서류를 재제출**해야함
11. 서류 제출 시, 가급적 등기로 전송하며 발송 오류에 관하여는 운영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1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이중 자격 발급이 불가하며, 2회차 이상 시험 합격자의 경우 최초 합격 회차를 기준으로 심사 검토가 진행되며 자격 발급 회차는 선택 불가
13. 검토기간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서류 발송 확인일로 부터 약 2주 소요 예정

나. 자격증 발급

- 신청자격: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결격사유에 이상 없음이 확인된 자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온라인 발급/우편 발급 선택 > 신청내용 작성 > 결제 > 접수 완료 > 발급 및 배송
 - ※ 온라인/우편 발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 형태와 상관없이 효력이 동일함
 - ※ 자격증 신규 발급은 최초 1회 가능하며, 재발급 시 이전 자격증의 효력은 없어짐
- 교부명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교부기관: 한국생산성본부
- 발급 비용 및 소요 기간

발급 형태	발급 소요 시간	수수료	배송비	총 결제금액
온라인 발급	즉시(자가 프린터 사용)	2,000원	-	2,000원
우편 발급	2주 내외	2,000원	3,000원	5,000원 (케이스 포함)

다. 자격증 재발급 신청

- 신청자격: 신규 발급이후 훼손, 분실, 인적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자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신청내용 작성 > 결제 > 접수 완료 > 증빙서류 제출 > 승인 > 발급 및 배송

구분	신청방법	증빙서류
훼손	자격증 신청시 [훼손] 선택하여 신청한 뒤 증빙서류 제출	자격증 원본
분실	자격증 신청시 [분실] 선택 후 분실사유 기입	-
인적사항 변경	자격증 신청시 [인적사항 변경] 선택하여 신청한 뒤 증빙서류 제출	자격증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기본증명서 원본

※ 재발급 신청 후, 증빙서류를 반드시 1주 이내로 아래 주소로 전송

·증빙서류 제출처: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적선동) 생산성빌딩 10층 자격컨설팅센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

※ 관련 서류 확인 후 재발급 신청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이후 재발급 진행이 가능함(서류 도착일로부터 약 1주 내외 소요)

※ 서류 미비 시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며, 승인 취소 시 환불 처리됨

○ 재발급 비용 및 소요 기간

발급 형태	발급 소요 시간	수수료	배송비	총 결제금액
온라인 발급	승인 즉시 (자가 프린터 사용)	2,000원	-	2,000원
우편 발급	2주 내외	2,000원	3,000원	5,000원 (케이스 포함)

11. 응시자 일반 유의사항

○ 수험 원서,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위조·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자격취득자의 경우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는 가능하나, 합격하여도 자격 취득은 불가합니다. ※ 화장품법 제3조의4제1항에 근거

○ 응시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고사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고사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9:00) 이후 고사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고사장은 본 자격시험의 고사실(교실)이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9시 정각에 해당 건물의 1층 주출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 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청소년의 경우)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및 청소년증

○ 시험 도중 포기하거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 지정된 고사실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 시간을 관리하기 바라며,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wifi 불가 전자시계 포함,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는 시계 대응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교실에 있는 시계와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 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시계는 모두 사용을 금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 증후군 환자 등 시험 중 반드시 화장실 사용이 필요한 자는 장애인 응시자 등의 응시 편의제공을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응시자는 재입실·응시 불가합니다.
-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시험 도중 퇴실 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 본부에서 대기해야 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미 합격한 자의 경우 화장품법 제3조의 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고사실 내외의 자료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수험표 등 시험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11.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2.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wifi 불가모델 포함), 스마트워치(wifi 불가모델 포함), 계산기 등
 -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 꺼서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은 허용하지 않음.)

13.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 및 작성하는 행위
14.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5.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행위
16.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행위
1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답안지는 문제번호가 1번부터 100번까지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다형 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 수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를 요청해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답안 마킹방법 및 주의사항

1.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특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2.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 ⊙ ⊙

3.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무효처리 됨
4. 채점자 기입란에 표기시 무효처리 됨

- 단답형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해당 답안 칸에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항별 배점(부분점수 포함)은 시험당일 문제에 표기하여 공개됩니다.
-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지정 필기구 미사용) 응시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시험 당일 고사장 내에는 주차 공간이 없거나 협소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이며, 이에 따라 시험 당일 문제지 반출이 불

가합니다.

-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열람하고 싶은 응시자는 합격일 이후 별도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 응시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수료를 과오 납입한 경우 : 과오 납입한 금액 반환
2.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5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5. 시험 시행일 9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취소 및 환불 불가
6.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 수수료 포함)
7.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8.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9.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10.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응시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11.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 고사장은 전체가 금연 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의 시행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예방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응시자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응시자

- 체온 측정 및 발열 여부 확인 후 고사장 입장
 - 고사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온이 37.5도 미만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 진행
 -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시험 진행 가능
- 마스크 착용 권고
 -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리며,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소독제 및 세정제를 활용하여 수시로 손을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독관에게 증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 시험 진행 또는 귀가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나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 주십시오. 손소독제 및 세정제를 활용하여 수시로 손을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증상이 있어, 감독관 판단 및 응시자 동의로 귀가한 경우 100% 환불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격리자)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격리자)로서 격리기간이 시험 당일(2023년6월3일)을 포함하는 응시자의 경우, 환불신청서를 제출할 시 응시료는 100% 환불됩니다.
 - [첨부1. 확진자(격리자)환불신청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기한(2023년6월2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격리자)로서 격리기간이 시험 당일(2023년6월3일)을 포함하는 응시자임에도, 취업 승진 진학 등으로 인해 반드시 이번 회차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 확진자(격리자) 응시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2. 확진자(격리자)응시신청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기한(2023년5월31일(수)오전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확진자(격리자) 응시신청을 한 이후에는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 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시험을 응시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등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안내는 시험일 기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

13. 시험운영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
- 전화번호: 1577-9402
- 홈페이지: cmm.kpc.or.kr